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32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김도읍 · 권영진 · 윤한홍
김대식 · 김기현 · 김희정
고동진 · 구자근 · 박정하
김소희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교통유발계수”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u>이용자 수</u> , 매 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 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 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u>교통유발계수</u> 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 ----- <u>이용자의 규</u> <u>모와 특성</u> ----- ----- ----- ----- ----- ----- <u>교통유발계수</u> 를 <u>세분화</u> 하고, ----- ----- -----.
<신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 부담금이나 <u>교통유발계수</u> 를 조 례로 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 부담금이나 <u>교통유발계수</u> 를 조 례로 정하는 경우 또는 제3항

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